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)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14.
경 상 북 도 지 사

1. 행정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근거	처분내용 (기간)
주식회사 재상종합건설 (유재상)	건축공사업 (16-0731)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41-3, 2층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(보증가능금액) 미달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 제3호	영업정지 (5개월) (2026.8.5. ~2027.1.4.)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6)로 문의 바랍니다.